

1. 개정 이유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와 신고기관의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인삼 관련 품목 조합으로 단순 조문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신고서식 변경)

- 인삼경작자가 인삼 경작신고를 하는 기관을 “지자체장 및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변경

나. 경작신고내용의 인삼자조금단체 제공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인삼자조금단체의 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필요성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은 활용목적에 따라 경작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3 개정)

- 인삼류제조업자의 영업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위반횟수에 비례한 가중 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조합장등””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장등”을 각각 “조합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등”을 각각 “조합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작신고내용의 제공) ①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제공받으려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경작신고내용의 활용목적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활용목적에 따라 경작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경작지 주소, 지목, 공부상면적, 인삼식재면적, 식재연월일, 수확예정연도, 식재구분, 수확예정연근 및 계약경작 여부

별표 3 제1호나목 후단 중 “한 날”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인삼경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	-----

신고인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적습니다.
-----------	------------------------

경작지 주소	지목	공부상 면적 (㎡)	인삼 식재 면적 (㎡)	식재 연월일	수확 예정 연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수확예정 연근 (6년/5년/4년/ 묘삼)	경작지 (자가/ 임차)	계약경작 여부
(본번)0000 - (부번)0000									

총 식재면적	m ²
--------	----------------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인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위하여 위의 신고내용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해 위의 신고내용을 같은 법에 따른 인삼 의무 자조금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인삼 수확 예정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경작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인삼경작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경작내용

신고번호:

경작지 주소	식재 면적(m ²)	잔존식재 면적(m ²)	식재 연월일	경작예정 기간	식재구분 (직파/ 이식)	수확예정 연근	계약 구분	임차 구분
(본번)0000-(부번)0000				~		연근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삼경작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직인

인삼경작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지 주소					
신고번호				변경 연월일	
경작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식재면적(㎡)					
식재연도					
경작지의 위치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인삼경작확인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품목조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품목조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기안 및 결재 품목조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인삼경작변경 신고확인증 교부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

신고인 또는 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신고번호		변경 또는 승계 연월일	
변경 또는 승계사항			
사 유 (변경·상속· 양수·합병)	경작지 주소	식재면적(㎡)	수확예정 연도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직인			

인삼경작승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 승계 사항				
경작지 주소		지 목	식재면적(㎡)	수확예정 연도
경작신고번호	승계 연월일	승계사유	상속 [] 양수 [] 합병 []	

「인삼산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	수수료 없 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경작신고 등) ① ----- ----- ----- ----- ----- ----- ----- 「농업협동조합법」 ----- ----- ----- ----- “조합장”----- ----- . ----- 조합장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	③----- ----- -----

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등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알릴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 조합장-----

-----, ----- 조합장-----

④ 조합장-----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

----- 조합장-----

② 조합장-----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경작신고내용의 제공)

①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경작신
고내용을 제공받으려는 「농수
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
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
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경작신고내용의 활용목적
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제공 요청을 받은 경
우에는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필
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활용목
적에 따라 경작신고내용 중 다
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 형
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경작지 주소, 지목, 공부상면
적, 인삼식재면적, 식재연월
일, 수확예정연도, 식재구분,

	수확예정연근 및 계약경작 여 부
--	----------------------